

8.8(수)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 2007. 8. 7 배포
총 6쪽(별첨자료 첨부)

보도자료

- ▶ 고용서비스혁신단 임서정 단장
편도인 사무관
- ▶ ☎ 503~9749, 504~6728
- ▶ E-mail : th0358@molab.go.kr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꼼짝마 !

- 노동부,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발표
-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등 총 25개 개선대책 마련·시행

□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 노동부는 7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급취득 관리강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 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20%) △과태료 신설 등

□ 노동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 종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 사업주가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를 더욱 확대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 또한,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alarm) 시스템이다.

- 이로써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이직자수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거치도록 하였다.
- 현재 총 47개의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의심사례를 계속 추가 보완해 갈 계획이다.
- 자동경보시스템과 더불어 고용보험전산망상 개인의 고용보험 조회이력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도 노동부는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 현장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이번 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 올 3월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최근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조직화 하는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노동부는 특별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특별조사와 함께, 지원금 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 브로커 개입사건에 대하여 노동부는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69개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 전원에 대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여 1,207명(부정수급액 4,577백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으며
- 6개 지방노동청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지원금 전반에 대하여 의심사례를 샘플링, 4~6월에 걸쳐 부정수급 면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참고로 지난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4대 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총 3조 4,406억원에 이르렀으며,

※ '04년 2조1,555억원, '05년 2조6,314억원

○ 이중 사업주나 실직자 등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52억(비중 0.15%)이었다.

※ '04년 44억, '05년 44억

□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부정수급을 근절하여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금번 종합대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 “부정수급은 다양한 적발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되어, 반드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내용 : 별도 자료

<붙임1>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현황 및 주요유형

① 부정수급 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6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896	9,743	11,754	7,561
	총 지급액	1,448,306	1,751,974	2,074,004	1,213,394
	부정수급액	3,722 ^{3,123}	3,840 ^{3,845}	4,241 ^{4,207}	4,731
	비율	0.26	0.22	0.20	0.39
고용안정 사업	부정수급건수	44	136	288	276
	총 지급액	98,227	203,474	378,230	224,266
	부정수급액	440	430	936	2,032
	비율	0.44	0.21	0.24	0.90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정수급건수	434	279	160	34
	총 지급액	598,050	690,647	862,944	470,775
	부정수급액	271	1,089	55	4
	비율	0.05	0.16	0.01	0.0008
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자	28	27	27	19
	총 지급액	62,413	74,283	125,407	87,340
	부정수급액	12	26	29	30
	비율	0.02	0.04	0.02	0.03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사업장	12	9	15	18
	총 지급액	123,801	101,302	86,008	55,960
	부정수급액	404	55	212	281
	비율	0.32	0.05	0.24	0.50

*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액/총지급액x100

* '0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에는 금번 브로커개입 사건의 부정수급액 중 반환명령 조치가 이루어진 일부금액만 포함

②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사실 은닉 및 소득미신고 ('06년 적발건수의 90.7%)
- 고용안정사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일자를 늦추어 허위신고('06년 적발건수의 89.4%)
- 직업능력개발사업 :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 훈련생 대리체크 ('06년 적발건수의 82.5%)
- 모성보호급여(산전후휴가급·육아휴직급여) : 휴가·휴직기간 허위 신고,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재취업 미신고 등
- 장애인 고용장려금 : 근로자 허위채용, 임금 과다신고 등

<붙임2> 자동경보시스템 예시 화면

- ① 최근 3개월간 이직자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신청서(신청)-상용 해당업무도움말

부정수급 모니터링

최근 3개월 사이 이직자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입니.

2007년06월28일11시36분12초 기준으로 조회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닫기

*주민등록번호			
*신고구분			
*신청인성명			
*주소			
E-Mail			
사정			
*사업			
최종 이직 사업장	주소	찾기	
	자격취득일		이직일
	*구체적이직사유 회사사정		

- ② 최근 1년간 근로일수가 180~210일인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건설현장(1번)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2번)

일용직근로내역신고 해당업무도움말

부정가능 0번 대상사업장 (20070620기근) ①

점수번호 151652007PAD10000597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하수급인 관리번호	찾기	사무대행 기관번호	찾기
*신고년월	처리상태	*신고구분	*신청종류	*신고일자	검색
2004/04	전체	신정	항구	2007/04/02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명	고용관리책임자 주민번호	전체반송사유		
점수일자	처리상태	등록완료	처리기한	성립일	소멸일
2007/07/02			2007/07/07	2004/01/01	
전체건수	등록완료	점수완료	등록가능	보완	반송
1건		1건	3건		가다

검색 총 1건

부정가능 0번 대상

5개 1/1

등록 삭제 반송 전체반송 공사명/관리책임자수정 일괄변경 신고서등록 등지서등록

보도 참고자료

2007.8.7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2007. 8.

노 동 부

I. 추진배경

- '95년 고용보험 도입이후 적용범위·대상을 빠르게 확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기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강화
 - 그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실적도 크게 증가

- 그러나, 지원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정수급 행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브로커 개입 등)
 - ※ 경인지역에서는 수명의 브로커가 수백명의 대상자를 모집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 발생
 - 이와 같은 부정수급 확산은 고용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아울러 활성화 중심의 제도설계·운영으로 인한 사중손실 증가는 지원금 제도의 고용효과를 저해

- 따라서,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지원금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
 - 이에, 6개 지방청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07.5~6월)를 일제히 실시하는 한편
 - 본부차원에서는 대책단(단장 차관)을 구성, 지원금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추진

- ◆ **그간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금번 「종합대책」을 수립함**

《 부정수급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7.31 현재) 》

<1>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

- (조사배경) '07.3월초 수서경찰서는 제보를 토대로 브로커 개입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
 - ※ 우리부는 「특별조사단」(서울청 주관)을 구성,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결과) 2,370명(조사대상의 99.7%)에 대한 조사 완료 → 부정수급자 1,207명 / 부정수급액 4,577백만원 / 추가징수액 4,478백만원(환수총액 9,055백만원)
 - <유형>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 양자가 공모하여 고용보험 허위 취득 후 실업급여 수급
- (조치사항)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6,708백만원)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조치 중(현재 371명)

<2>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특별조사

- (조사배경)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각종 지원금별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추출, 실태점검 실시('07.4~6월, 6개청 특별조사팀)
 - ※ 조사대상 : 고용안정사업 3,797개소, 모성보호급여 190개소, 훈련기관 195개소, 실업급여(사업장 103개소·수급자 1,560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개소
- (조사결과) 조사 완료 → 부정수급 사업장 151개소(인원 543명)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75명 / 부정수급액 1,849백만원
 - <주요유형> ①고용안정사업 : 채용일자를 늦추어 신고하여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청년) 부정수급 ②직업훈련 : 훈련기관 출석부 조작 ③실업급여 : 취업사실 은닉 ④장애인장려금 : 근로자 허위채용 ⑤모성보호급여 : 휴가·휴직기간 허위신고
- (조치사항)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환수총액 4,892백만원) /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및 훈련기관 인·지정 취소 조치 중
-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부정수급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업무전반에 걸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적발조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부정수급 자동정보 시스템 구축 등)

II.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1. 부정수급 사전예방 기능 확충

① 정확한 피보험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관리 인프라 확충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수도권 총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현장(~'07.6) → 수도권 100억이상 건설현장('07.하반기) → 전국 100억이상 건설현장('08년)
-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07.7월 시행)

□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엄격한 확인·처리

-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지연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소급취득 인정

□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및 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강화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자료(국세청) 등을 정기적으로 입수 → 의심 사례 발굴 및 허위신고 면밀조사 실시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국세청 및 타 사회보험기관과 공유하는 방안 추진(관계기관 협의)
 - ※ 비용 대비 혜택이 높은 고용보험에만 허위가입하는 부정행위 예방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또는 동일 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 명확화 → 브로커가 개입한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방지
 - ※ 동일인이 고용관리책임자로 관련 없는 다수 건설현장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② 지원금 제도를 재설계하여 운영을 내실화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활동촉진(Activation) 강화

- 수급자 연령 및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급자는 매주 센터에 출석토록 하고,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장기수급자 : 30세미만 150일, 30~49세 180일, 50세이상 210일 이상

-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정지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감액제도를 추가로 도입 <고용보험법 개정>

※ 1회 거부시 구직급여 10% 감액 → 2회 거부시 30% 감액 → 3회 거부시 구직급여 지급정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사전심사 기능 강화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및 사중손실 방지 <시행령 개정중>

☞ 고용안정사업 전반에 걸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07.하반기, 노동연구원 연구용역)

□ 수요자 중심 훈련시스템 정비 및 출결관리 강화

- 근로자에게 직접 훈련비용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식(훈련바우처 제도)을 단계적 확대 →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06.11월 도입, '07년 본격시행) → 실업자('08년 시범사업 후 본격추진) → 중소기업근로자('09년 도입)

- 바우처 발급시 고용지원센터의 훈련상담을 의무화 →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지원

- 출결관리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 근로자수강지원금('07.3분기) → 실업자훈련 및 사업주위탁훈련 → 사업주 자체훈련

③ 부정수급 예방교육 강화 및 자진신고 촉진

-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등을 적극 활용, 부정수급 예방교육·안내를 강화
- 매년 지원금 전반에 대한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정기 운영(상·하반기 연2회)
 - ※ 강조기간 중 자진신고시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2.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시스템 구축

① 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 및 장애인공단전산망에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례(총 47개)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담당직원에게 자동으로 부정수급 의심사례 경보, 면밀조사 실시(조사결과 전산망 입력)
 - ※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화면 예시 : 붙임3

②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 등을 조회한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내부직원 및 외부인(브로커 등)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부정수급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 또는 적발

③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

- (모성보호급여) 사업주와 급여신청자간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행자부 협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연계 → 장애인공단에서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확인

4] 본부-고용정보원-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본부) T/F팀 구성(매월 점검회의 개최) → 부정수급 동향·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 구성 : 고용서비스혁신단장(팀장), 관련팀, 감사실, 고용정보원
- (고용정보원) 「전산모니터링팀」 구성 → 의심사례 전산모니터링, 지방관서 조사실적 및 부정수급 동향 분석
- (고용지원센터) 청·지청 종합센터별로 상설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 → 부정수급 조사·처리 전담

5] 부정수급 제보제도의 활성화

-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부정수급액의 10/100 → 20/100) 및 홍보 강화
- 제보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

6] 조사대상을 무작위로 선정, 집중조사 실시

- 각종 급여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무작위로 선정, 정기적으로 집중조사 실시→부정수급 적발시 엄중 의법조치

3.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강화

1] 부정수급 제재조치의 합리적 정비

-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제재 강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신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300만원 이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07.4월 완료)

△출결관리 조작 등 악질적인 부정수급을 한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위탁제한과 함께 과태료 병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② 제재조치의 엄정한 집행

○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확행

※ 고용보험전산망에 「과태료 부과업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표준화 추진(PKMS 사업과 연계 추진)

4. 부정수급 관리 역량의 강화

① PKMS 사업*을 통한 업무표준화 추진('07~'08년)

○ 고용지원센터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재설계(BPR) 및 표준화 추진 → 각종 지원금 업무의 정확한 처리 도모

* PKMS(Process-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07년 : 피보험자격관리,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모성보호급여
'08년 :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외국인고용허가제

② 내부통제 장치 강화

○ 청 종합센터에 전담반 형식의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

- 청 관내 부정수급 조사와 아울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부정수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 부여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Ⅲ. 향후 추진일정

- 종합대책 발표(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8.7(화)
- 부정수급 조사팀 워크숍 개최 : 9월중
 - 조사팀 운영 요령 및 자동경보시스템의 개선방안 논의
 - *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등 교육 및 부정수급 사례 공유
-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 '07년 하반기~'08년
 - * 고용보험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 종합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본부 T/F) : 매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요약)

개선 과제	현 행	개선 내용
1. 부정수급 예방기능 강화		
1-1.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카드 단계적 확대	수도권 총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수도권 100억원 이상 건설 현장('07.하) - 전국 100억원 이상 건설 현장('08)
1-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명세통지서 발송업무	센터 직접 수행 → 행정력 부족으로 누락 발생	전문 외부기관 위탁('07.7) → 누락없이 발송
1-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에 대한 관리 강화	근로관계 명확한 확인 없이 소급취득 인정	근로관계 증빙서류 제출시만 소급취득 인정
1-4.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신고누락 확인에 활용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국세청) 미활용 - 건설일용 고용보험 가입정보 국세청 및 타보험 미공유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정보를 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강화 -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 입수·허위신고 적발에 활용 - 건설일용 고용보험 가입정보 국세청 및 타보험 공유 추진
1-5.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	규정 없음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 신설
1-6. 장기구직자에 대한 구직활동 의무 강화	장기수급자도 대부분 4주 1회 출석	장기수급자는 매주 출석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1-7. 직업소개 등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1차 경고 후 바로 지급정지	1차거부시 10% 감액→2차 30% 감액→3차 지급정지
1-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방식 변경	취업시점에 일시 지급	2회 분할 지급 (취업후 / 취업 3개월 경과후)
1-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정비	센터 등에 구직등록후 일정 기간(1~6월) 경과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사업주가 센터 등에 구인신청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1-10. 훈련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및 훈련상담 의무화	- 비정규직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운영 - 훈련상담 형식적 운영	- 실업자훈련 확대('08 시범 운영후 본격 시행) - 바우처 발급시 훈련상담 의무화
1-11. 자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확대	없 음	근로자수강지원금('07.3분기) 적용후 단계적 확대
1-12.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정기 운영	각종 지원금별로 부정기적으로 운영	각종 지원금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연2회)

개선 과제	현 행	개선 내용
2. 부정수급 적발장치의 강화		
2-1.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운영	미구축	- 47개 의심사례에 대한 경보 시스템 구축 완료('07.6) - 의심사례 계속 발굴하여 시스템 강화
2-2.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미구축	구축 완료('07.6)
2-3. 본부·고용정보원·센터를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담당자(1명) 운영	본부(T/F)·고용정보원(전산 모니터링팀)·센터(부정수급 조사팀) 연계 운영
2-4. 유관기관 정보연계 강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없음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미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07.하)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 연계('07.하)
2-5.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	부정수금액의 10/100	부정수금액의 20/100
2-6. 무작위 선정 조사 실시	의심자 위주의 조사	지원자의 일정비율 이상 무작위 선정
3. 부정수급 제재조치 강화		
3-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
3-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미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3-3.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 미비	악질적인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 신설
3-4. 훈련과정 위탁(인정) 기준 보완	훈련기관이 위탁제한 후 과정일부만 변경하여 신청하여도 과정인정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폐지 → 훈련기관에 대한 제한으로 일원화
3-5. 제재조치의 집행	행정력 부족,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제재조치에 대한 집행 미흡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 확행
4. 부정수급 관리 역량의 강화		
4-1.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	매뉴얼 중심으로 업무처리(센터별 업무처리에 편차)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07년 고용보험, '08년 워크넷)
4-2. 내부통제 장치의 강화	본부(감사실) 중심 내부통제 → 통제장치 부족	청 부정수급 전담반에 감찰 기능 부여 → 내부통제 강화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조치 일정(요약)

■ 기초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 발송업무 외주화('07.7월부터 시행) ▪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고용보험 개인정보 조회내역 관리시스템」 구축('07.6월 완료) ▪ 본부-고용정보원-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07.5월부터 가동) ▪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개선('07.6월 완료) 		
■ 조치 예정		
법령개정 후 조치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신설(건설근로자고용 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 직업소개 등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제60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신설(제117조) ▪ 악질적인 부정수급 훈련기관에 대한 과태료 병과(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48조)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방식 개선(제61조)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제22조의2) ▪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제22조의2 등)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시 지급제한 범위 조정(제35조의4)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미신고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2)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조정(별표) ▪ 훈련과정 위탁(인정)기준 보완(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25조)
	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 구성(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단계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훈련바우처 제도의 단계적 확대 ▪ 직업훈련 지문인식 출결관리시스템 확대 ▪ PKMS를 통한 업무표준화 	
즉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격 소급취득에 대한 엄격한 확인·처리 ▪ 유관기관 정보연계 확대 및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조사활용 ▪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구직활동 의무 강화 ▪ 부정수급 예방교육 강화 및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자부 협의) ▪ 장애인공단·고용보험전산망간 연계 	

* 법령명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령

<붙임1> 고용지원사업 지원금별 지원실적

□ 실업급여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지급자	실업인정건수	실업급여 지급액		
			총액	구직급여	취직촉진수당
1996	7,308	27,031	10,459	9,986	473
1997	48,677	260,665	78,732	76,155	2,577
1998	412,600	2,480,448	799,154	783,881	15,273
1999	462,635	2,440,410	936,185	913,948	22,237
2000	303,631	1,743,144	470,793	445,909	24,884
2001	374,286	2,743,568	845,109	787,960	57,149
2002	362,895	2,476,271	839,319	778,232	61,087
2003	433,798	2,965,339	1,030,304	950,424	79,880
2004	589,611	3,781,280	1,448,306	1,333,409	114,896
2005	696,544	4,207,599	1,751,974	1,608,714	143,260
2006	767,314	3,423,871	2,074,004	1,839,823	234,181
2007.6	537,768	1,837,029	1,213,394	1,058,963	154,432

□ 고용안정사업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장	인원	지원금액
1995	-	24,445	1,492
1996	5,735	92,981	8,574
1997	7,017	117,416	12,254
1998	14,758	780,799	96,635
1999	97,900	668,209	184,211
2000	101,846	450,479	113,945
2001	100,396	567,701	128,846
2002	85,522	476,079	90,052
2003	85,823	507,495	92,693
2004	83,107	415,185	98,227
2005	167,621	509,946	203,474
2006	276,704	707,831	378,230
2007.6	171,925	397,025	224,266

□ 직업능력개발사업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인원(건수)	지원금액
2000	1,435,000	503,394
2001	1,805,947	492,513
2002	1,911,391	534,587
2003	1,849,456	535,270
2004	2,176,280	598,050
2005	2,646,725	690,647
2006	3,258,991	862,944
2007.6	1,638,080	470,775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지급금액	지급사업체	대상인원	지원금 (300인이상)	단가 1인당/월
				장려금 (300인미만)	
2000	14,546	271	28,113	6,181	207,000원
		769	40,383	8,365	
2001	39,617	285	48,927	15,876	216,000원(1~6월) 361,000원(7~8월) 421,000원(9~12월)
		1,277	63,258	23,741	
2002	81,785	358	63,240	29,142	421,000원(1~8월) 474,000원(9~12월)
		2,053	95,286	52,643	
2003	111,566	387	77,420	38,688	474,000원(1~12월)
		2,720	129,397	72,878	
2004	123,801	3,671	244,389	123,801	30%이하 : 30~45만원 30%초과 : 40~60만원
2005	101,302	4,142	274,322	101,302	"
2006	86,008	4,284	238,871	86,008	"
2007.6	55,960	3,757	158,110	55,960	"

□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총 지급액	실수급자
2000	-	-
2001	2	2
2002	22,602	22,711
2003	33,522	32,133
2004	41,610	38,541
2005	46,041	41,104
2006	90,886	48,972
2007.6	62,719	28,133

< 육아휴직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총 지급액	실수급자
2000	-	-
2001	5	25
2002	3,087	3,763
2003	10,576	6,816
2004	20,803	9,303
2005	28,242	10,700
2006	34,521	13,670
2007.6	24,621	9,717

<붙임2>고용지원사업 지원금별 부정수급 현황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비율	
	지급자	지급액	수급자	수급액	지급자	지급액
2000	303,631	470,793	3,966	1,288	1.31	0.27
2001	374,286	845,109	4,433	1,446	1.18	0.17
2002	362,895	839,319	4,555	2,062	1.25	0.25
2003	433,798	1,030,304	4,572	1,788	1.05	0.17
2004	589,611	1,448,306	6,896	3,723	1.17	0.26
2005	696,544	1,751,974	9,743	3,845	1.39	0.22
2006	767,314	2,074,004	11,754	4,207	1.53	0.20
2007.6	537,768	1,213,394	7,561	4,731	1.41	0.39

※ 부정수급비율 = 부정수급자(액)/실업급여지급자(액)x100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취업사실 은닉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소득미신고	기타
2000	3,966	3,191 (80.5)	282 (7.1)	106 (2.7)	387 (9.7)
2001	4,433	3,559 (80.3)	292 (6.6)	111 (2.5)	471 (10.6)
2002	4,555	3,660 (80.4)	332 (7.3)	87 (1.9)	476 (10.4)
2003	4,572	3,685 (80.6)	326 (7.1)	116 (2.5)	445 (9.8)
2004	6,896	5,766 (83.6)	319 (4.6)	211 (3.1)	600 (8.7)
2005	9,743	8,533 (87.6)	200 (2.1)	429 (4.4)	581 (5.9)
2006	11,754	10,277 (87.4)	286 (2.4)	391 (3.3)	800 (6.9)
2007.6	7,561	5,745 (76.0)	851 (11.3)	324 (4.3)	641 (8.4)

□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1	128,846	247	1,097	0.85
2002	90,052	95	818	0.91
2003	92,693	102	680	0.73
2004	98,227	44	440	0.45
2005	203,474	133	407	0.20
2006	378,230	287	958	0.25
2007.6	224,266	276	2,032	0.90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사업명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2005	2006	2007.6	2005	2006	2007.6
고용안정지원금 총계	133	287	276	407	958	2,032
고용유지지원금	35	24	11	272	70	3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4	1	-	5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2	5	3	-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4	9	9	9	25	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88	239	244	125	853	1,99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	3	-	-	3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1	3	-	2	-
육아휴직장려금	2	2	3	-	-	-
직장보육시설 지원	1	-	-	1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	1	-	-	-
재고용장려금	-	-	1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3	535,290	190	269	0.05
2004	598,050	434	271	0.05
2005	690,647	279	1,089	0.16
2006	862,944	160	55	0.01
2007.6	470,775	34	4	0.0008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실업자		재직자(자체·위탁)		수강지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183	38	3	¹⁾ 0	4	231
2004	392	117	26	152	16	2
2005	250	87	18	1,000	11	2
2006	142	20	1	32	17	3
2007.6	32	4	0	0	2	0 ²⁾

* 1)실금액 : 97,000원 2)실금액 : 480,000원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훈련수강	수료자	계산서 등 지출	훈련생	증빙서류 조작	기타	
		허위조작	허위조작	증빙서류 조작	부적격자 수강	(근로자/훈련생)		
2003	건수	190	3	17	169	1	-	-
	비율	100.0	1.6	8.9	89.0	0.5	0	0.0
2004	건수	434	15	3	4	326	-	86
	비율	100.0	3.5	0.7	0.9	75.3	0	19.7
2005	건수	279	4	11	-	245	3	16
	비율	100.0	1.5	4.0	0	89.0	1.1	5.7
2006	건수	160	6	-	-	132	9	13
	비율	100.0	3.8	0	0	82.5	5.6	8.1
2007.6	건수	34	1	-	-	23	1	9
	비율	100.0	2.9	0	0	67.6	2.9	26.6

□ 모성보호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0	-	-	-	-
2001	2	-	-	-
2002	22,601	3	1	0.004
2003	33,522	11	5	0.014
2004	41,160	5	2	0.005
2005	46,041	7	7	0.015
2006	90,886	9	12	0.013
2007.6	62,719	7	11	0.018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부정수급비율
2000	-	-	-	-
2001	5	-	-	-
2002	3,087	6	3	0.097
2003	10,576	10	9	0.085
2004	20,803	23	10	0.048
2005	28,242	20	19	0.067
2006	34,521	18	17	0.049
2007.6	24,621	12	19	0.077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급액 / 총지급액 × 100

< 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휴가기간, 일수 허위신고	휴가기간동안 근로제공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신고	기타
2002	3	- (-)	- (-)	- (-)	3 (100)
2003	11	- (-)	- (-)	- (-)	11 (100)
2004	5	4 (80.0)	0 (-)	1 (20.0)	0 (-)
2005	7	5 (71.4)	1 (14.3)	0 (-)	1 (14.3)
2006	9	1 (11.1)	2 (22.2)	1 (11.1)	5 (55.6)
2007.6	7	- (-)	- (-)	2 (28.6)	5 (71.4)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명, %)

구 분	계	휴가기간, 일수 허위신고	휴가기간동안 근로제공	이직및취업사실 미신고	기타
2002	6	- (-)	- (-)	- (-)	6 (100)
2003	10	- (-)	- (-)	- (-)	10 (100)
2004	23	15 (65.2)	3 (13.0)	1 (4.3)	4 (17.4)
2005	20	7 (35.0)	3 (15.0)	4 (20.0)	6 (30.0)
2006	18	2 (11.1)	4 (22.2)	4 (22.2)	8 (44.4)
2007.6	12	2 (16.7)	2 (16.7)	4 (33.3)	4 (33.3)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개소, 백만원, %)

구 분	총 지급액	부정수급사업장	부정수금액	부정수급비율
2000	14,546	-	-	-
2001	39,617	6	111	0.28
2002	81,785	14	780	0.95
2003	111,566	5	64	0.05
2004	123,801	12	404	0.32
2005	101,302	9	55	0.05
2006	86,008	15	212	0.24
2007.6	55,960	18	281	0.50

※ 부정수급 비율 : 부정수금액 / 총지급액 × 100

<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

(단위: 개소, %)

구 분	사업체 수			
	계	허위고용	임금허위지급 (과대계상/미지급)	근무기간허위
2003	5(100)	1(20)	3(60)	1(20)
2004	12(100)	4(33)	7(58)	1(9)
2005	9(100)	4(44)	5(56)	-
2006	15(100)	8(53)	5(33)	2(14)
2007.6	18(100)	6(33)	8(45)	4(22)

<붙임3> 자동경보시스템 예시 화면

- ① 최근 3개월간 이직자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신청서(신청)-상용 해당업무도움말

부정수급 모니터링

최근 3개월 사이 이직자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수급자입니다.

2007년 06월 28일 11시 36분 12초 기준으로 조회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닫기

*주민등록번호				검색
*신고구분				318
*신청인성명				
*주소				
E-Mail				
신청				
*사업				
최종 이직 사업장	주소	찾기		
	자격취득일		이직일	
	*구체적이직사유	회사사정		

- ② 최근 1년간 근로일수가 180~210일인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건설현장(1번) 건설현장 고용관리책임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2번)

일용적근로내역신고 해당업무도움말

부정가능 ①번 대상사업장 (20070620기) ②

사업장 관리번호		()허수급인 관리번호		접수번호	151652007PAD1000697	
*사업장 관리번호		*허수급인 관리번호		사무대행 기관번호		
*신고연월	처리상태	*신고구분	*신청경로	*신고일자		
2004/04	전체	신규	장구	2007/04/02	검색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명	고용관리책임자 주민번호		전체반송사유		
접수일자	처리상태	등록완료	처리기한	성명일	소환일	
2007/07/02			2007/07/07	2004/01/01		
전체건수	1건 등록완료	접수완료	1건 등록거부	보완	반송	기타
검색 총 1건		부정가능 ①번 대상		5개 1/1		

등록 삭제 반송 전체반송 공사명/관리책임자수정 일괄변경 신고서등록 등지서등록